

	입학전형 회피, 제척 운영 규정	문서번호	3-4-19		
		제정일	2020. 11. 01.		
		개정일		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본 대학'이라 한다)의 학생선발을 위한 평가 및 관리업무에서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을 대학 스스로 관리하여 학생선발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“회피”는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이 스스로 입학관련(입학평가 및 관리 등)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“제척”은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을 입학관련 업무(입학평가 및 관리 등)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회피·제척제도는 모든 입학전형에 적용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피 및 제척 신고를 해야 한다.

1. 본인 및 배우자가 지원한 경우
2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, 자녀 및 친인척(4촌 이내)을 포함한 지인이 지원한 경우
3.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지원한 경우

제4조(방법 및 절차) ① 회피 및 제척 사유가 있는 교직원은 입학관련 평가 전에 입학관리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수험생이 본교에 지원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심의 및 총장 결재를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② 신고서를 제출한 교직원은 입학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.

제5조(위반자처리) 회피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원자의 합격에 부정하게 기여한 교직원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후속조치를 요구한다.

제6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입학전형 회피, 제적 운영 규정		문서번호	3-4-19	
			제정일	2020. 11. 01.	
			개정일		
			페이지	2/2	관리 부서 교무처

< 별표1 >

대학입학전형 회피 자진 신고서

☐ 신고자 인적사항

성명		소속부서	
직위/직급		연락처	

☐ 지원자 인적사항

성명		출신고교	
수험번호		교직원과의 관계	
모집시기	☐ 수시 1차 ☐ 수시 2차 ☐ 정시 ☐ 편입학 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		
전형유형	☐ 일반전형 ☐ 정원내 특별전형 ☐ 정원외 특별전형		

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	개인정보 제공 항목	동의
대학입학전형 회피 여부확인	신고자 인적사항(성명, 소속부서, 직위/직급, 연락처), 지원자 인적사항(성명, 출신고교, 수험번호, 교직원과의 관계) 및 지원학과, 모집시기, 전형유형 * 보유기간 1년	☐

*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. 단, 동의하지 않을 입학전형 업무에 제한
받을 수 있음.

위와 같이 회피 자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 고 인: _____ (서명)

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장 귀하